[공모펀드 변경 안내]

가. 대상 펀드: 교보악사 파워플러스 장기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[주식혼합]

나. 변경 시행일 : 2015년 2월 6일(금)

다. 변경 대상 서류 :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라. 변경 내용 :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17조(투자	투자대상 신설	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대상자산등)		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		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		<u><신 설></u>	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
			<u>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할</u>
			<u>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</u>
			<u>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
제32조(집합	자본시장과 금융	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투자기구의	투자업에 관한 법	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	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
회계감사)	률 개정사항 반영	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	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
		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	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
		사를 받아야 한다. <u><단서조항 신</u>	사를 받아야 한다. <u>다만, 법 시행</u>
		<u>설></u>	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			그러하지 아니한다.

[투자설명서]

		[1.450.1]	
구분	사유	정정전	정정후
[표지] 효력발생일	효력발생일 변경	2015년 1월 5일	2015년 2월 6일
제2부. 집합투자기	연혁 신설	<u><신 설></u>	- 투자대상자산 확대 (환매조건
구에 관한 사항 中			부매수 신설)
'2. 집합투자기구의			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
연혁'			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(집합투
			자기구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
			<u>항)</u>
			<u>- '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</u>
			<u>탁에 세제혜택'과 관련하여 농</u>
			<u>어촌특별세 부과에 관한 사항</u>
			<u>추가</u>
			<u>- 지방세법 개정('15.1.1시행) 사</u>
			<u>항 반영 - "내국법인에 대한 과</u>
			세윸 변경(14% →15.4%)"



제2부.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中 '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', 가. 투자 대상	투자대상 신설	<u><신 설></u>	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 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 약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제2부.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中 '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 항', "나. 과세", (3) 수익자에 대한 과 세율	지방세법 개정(' 15.1.1시행) 사항 반영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: 개 인 15.4% (지방소득세 포함), 일 반법인 14% ① (생 략)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%의 세율로 원천 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 (이하 생략)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: 15.4% (지방소득세 포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.4% (법인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의 세율로 원 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
제2부.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中 '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 항', "나. 과세", (4)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	농어촌특별세 부 과에 관한 사항 추가 기재	세제혜택 : 납입액의 40% 소득 공제 (연 240만원 한도)	세제혜택: 납입액의 40% 소득 공제 (연 240만원 한도. <u>단, 소</u> 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 액의 20%에 대해서는 농어촌특 별세 별도 부과)
제5부. 기타 투자 자보호를 위해 필 요한 사항 中 '3. 집합투자기구의 공 시에 관한 사항', "가. 정기보고서"	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 률 개정사항 반영	<신 설>	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 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 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 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

	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
	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
	<u>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</u>
	<u>하지 아니한 경우</u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분	사유	정정전	정정후
[표지] 효력발생일	효력발생일 변경	<u>2015년 1월 5일</u>	2015년 2월 6일
Ⅱ. 매입.환매 관련	농어촌특별세 부	세제혜택 : 납입액의 40% 소득	세제혜택 : 납입액의 40% 소득
정보 中 ' 2. 과세'	과에 관한 사항	공제 (연 240만원 한도)	공제 (연 240만원 한도. <u>단, 소</u>
	추가 기재		<u> </u>
			액의 20%에 대해서는 농어촌특
			<u>별세 별도 부과</u>)